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1

2026. 2. 25.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2026. 2. 12. 황영각 의원 등 9인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2026. 2. 25.)

“수정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황영각 의원)

자전거 시설 및 이용요금을 무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요금 부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전거 보관소 요금 연 10,000원을 무료로 전환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2)

나. 임대 자전거 이용 요금 월 1,000원을 무료로 전환함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3)

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가. 조문 내용별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시설 및 이용요금을 무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서 조례 실효성과 명확성을 위한 법률용어 정비 및 체계 재구성을 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 **안 제2조**에서 체계를 재구성하면서 제6호에 명시된 ‘임대자전거’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전거**는 행정주체가 교통 편의, 탄소 저감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물적 시설이 결합된 **행정법상 ‘영조물(營造物)’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임대’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대가가 오가는 유상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하는 사법(私法)적 용

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의 무료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차임(대가)이 없는 무상 계약인 사용대차에 해당하여 이를 ‘임대’로 지칭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들은 **공공의 이용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울시나 대전시 등 대다수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공공자전거 또는 공영자전거**라는 명칭을 사용 중이며, 운영 체계 역시 무인대여시스템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책임 소재의 명확화 관점에서도 용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자전거 이용 중 기기 결함이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 관리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됨.

그러나 ‘임대자전거’로 용어를 정의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강남구가 마치 일반 ‘자전거 대여사업자’인 것처럼 오인되어 민법상 계약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등 불필요한 법적 논쟁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마지막으로 조례의 **임대자전거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현행의 “유료 대여 방식”이라는 규정은 본 개정안의 무료화 취지를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운영의 유연성과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이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1)]

1) **“공공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안 제10조**는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임에도, **“이용자의 책임 아래”**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조문의 제목 및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입법 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강남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조례에 포괄적으로 ‘이용자 책임’이라고 명시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강남구의 배상 책임이 원천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님.**

  또한, 동 조례 제8조에서는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강남구에 명확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에서 “이용자의 책임 아래”라고 상반되게 규정하는 것은 조례 내부의 체계적 충돌과 모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단서규정 없는 포괄적 책임 전가 규정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강남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향후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 강남구와 이용자 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충돌을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2)3)]

- **안 제14조**는 공공자전거의 운영 방식 및 내구연한을 규정하는

2)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00조(공공자전거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공공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하여야 한다.

조항으로, 제2항에서 자전거의 내구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내용연수[조달청 고시(2025. 1. 1.)]상 일반자전거(물품분류번호: 25161507)의 내용연수가 7년으로 설정된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짧은 기준이며, 임대자전거의 이용 빈도와 외부 노출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3년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자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행 기준을 고수할 경우, 정비 후 충분히 재사용 가능한 자산까지 조기에 폐기하게 되어 **예산 낭비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에 따라 상태 판정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연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반대로 내구연한 경과 전이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불용(不用)’ 확정을 하는 등 실무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4)]

나.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시설 및 이용 요금을 무상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용어 수정 및 조문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이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과 구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4)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무료화 도입 시 현행 ‘1개월 이상 장기 임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장기임대는 이용자가 자전거를 가정 내 보관하며 상시 점유하게 함으로써 타 구민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공공자산을 특정 개인의 전유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비용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 임대는 사실상 강남구 자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개인 자전거처럼 사용됨에도 수리비 등 유지관리비는 구 예산으로 충당되어 수혜자 부담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단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공공자전거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내용연수의 적용

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나)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한 내용연수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유사분류 물품을 찾아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물품분류체계의 소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6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나)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중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4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다)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대분류(물품분류번호 8자리 중 상위 2자리)가 동일한 물품 중 용도와 기능이 가장 유사한 물품

라) 해당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물품분류체계상 분류가 다르더라도 실제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물품

3) 유사분류 물품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경과일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20. 5. 1.인 경우 내용연수 경과일은 202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 - 30호, 2024. 12. 26.>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671

제안연월일: 2026. 2. 25.
제 안 자: 행정안전위원장

1. 수정이유

자전거 시설 및 이용요금을 무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전거의 내구연한과 관련하여 자전거 연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수정함(안 제2조제6호, 12조제2항, 안 제14조)

나. 자전거 대여 방식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6호)

다.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라. 자전거 내구연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임대자전거”란 서울특별시”를 ““공공자전거”란”으로 하고,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안 제14조 제목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하고, “한다”를 “하며,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공공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보증금	10,000원	
이용요금	무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의 자전거 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자	3. ---------- ---------- ---------- ---------- ---------- ---------- ---------- ---------- 시설---- ----------	3. ---------- ---------- ---------- ---------- ---------- ---------- ---------- ---------- 시설---- ----------

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 사람에게 ---------- -----.	5. ---------- -- 사람에게 ---------- -----.
6. “임대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임대자전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	② ---------- 경우, 그 관리·운영----------	② ---------- 경우, 그 관리·운영----------

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 때에는 ----------. <삭 제>	--- 때에는 ----------. <삭 제>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임대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임대자전거 ----------. ----------	② ---------- 공공자전거 ----------. ----------
제14조(임대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임대자전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 ---------- 공공자전거----------.
② 임대자전거의 내구	② 임대자전거------	② 공공자전거------

연한은 3년으로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 한다.	---------- 하며,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임대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임대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③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공공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임대자전거 이용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삭 제>	<삭 제>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

·운영) ①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운영) <삭 제>	·운영) <삭 제>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 --- ---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수정안 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2]

자전거 보관소 요금표(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시 (1시간당)	1일 주차권	월 정기권	연간 정기권
금 액	-	-	-	10,000원

[별표 3]

임대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보증금	10,000원	
이용요금	월 1,000원	일일대여는 무료

개 정 안

<삭 제>

[별표 3]

임대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보증금	10,000원	
이용요금	무료	일일대여는 무료

수 정 안

<삭 제>

[별표 3]

공공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보증금	10,000원	
이용요금	무료	일일대여는 무료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조제5호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대자전거”란”을 ““공공자전거”란”으로 하고,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을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 “경우, 그 관리·운영”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자전거”를 “공공자전거”로 하고,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과 같다”를 “하며,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공공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의 날과”를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공공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보증금	10,000원	
이용요금	무료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삭 제>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의 자전거 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3. ---------- 시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5. ----------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람에게 ----------.
6. “임대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란 ----------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의 결함이나 설치·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 경우, 그 관리·운영---------- 때에는 ----------. <삭 제>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2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 수리센터는 임대자전거 및 방치된 자전거의 수거·수리와 개인소유 자전거에 대한 경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단순 정비 서비스 및 소액의 부품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공공자전거 ----------.
제14조(임대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대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대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 공공자전거 ----------. ② 공공자전거---------- 하며, 내구연한 경과 후에도 안전 점검을 통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공공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임대자전거 이용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삭 제>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삭 제>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 ----------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위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황영각·이성수·윤석민·
강을석·김진경·노애자·
복진경·이동호·김형대 의원
(이상 9인)

1. 개정이유

자전거 시설 및 이용요금을 무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요금 부과에 따른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보관소 요금 연 10,000원을 무료로 전환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2)

나. 임대 자전거 이용 요금 월 1,000원을 무료로 전환함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3)

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조제5호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대자전거”란”을 ““임대자전거”란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을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 “경우, 그 관리·운영”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과 같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대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임대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의 날과”를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을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임대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보증금	10,000원	
이용요금	무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삭 제>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의 자전거 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3. ---------- 시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5. ----------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사람에게 ----------.
6. “임대자전거”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가 유료 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임대자전거”란 서울특별시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이용요금) ①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는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경우, 그 관리·운영---------- 때에는 ----------.

③ 자전거 보관소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용하며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삭 제>
제14조(임대자전거의 운영) ① (생 략) ② 임대자전거의 내구연한은 3년으로 하며, 대여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임대자전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신 설>	③ 임대자전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3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보증금은 임대자전거 반환 시 돌려준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임대자전거 이용자에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삭 제>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제22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삭 제>

②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 ----------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 위탁----------.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구별표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
[별표 2]

자전거 보관소 요금표(제10조제3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1회 주차시
(1시간당)</th><th>1일 주차권</th><th>월 정기권</th><th>연간
정기권</th></tr>
<tr><td>금 액</td><td>-</td><td>-</td><td>-</td><td>10,000원</td></tr>
</table>

[별표 3]

임대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2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금 액</th><th>비 고</th></tr>
<tr><td>보증금</td><td>10,000원</td><td></td></tr>
<tr><td>이용요금</td><td>월 1,000원</td><td>일일대여는 무료</td></tr>
</table>
</td>
<td>
<삭 제>

[별표 3]

임대자전거 요금표(제14조제3항 관련)

<table>
<tr><th>구 분</th><th>금 액</th><th>비 고</th></tr>
<tr><td>보증금</td><td>10,000원</td><td></td></tr>
<tr><td>이용요금</td><td>무료</td><td></td></tr>
</table>
</td>
</tr>
</table>